(건축-012) ○○업무시설 철거현장 붕괴사고

공사명	○○ ○○동 업무시설 신축공사중 철거공사				
사고일시	2019년 12월 1일(일) 09:40분경		기상상태	흐림	
소재지	경기도 과천시	사고 종류	무너짐(붕괴·도괴)		
구조물 손실	_	인적피해	부상 2명		
장비 손실	_	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	해당(), 해당없음()		

가. 사고개요

1) 공사개요

○ 공사종류 : 업무시설

○ 공사면적 : 연면적 113,482㎡

○ 공사규모: 지하5층, 지상25층, 업무시설 2개동(오피스, 오피스텔)

○ 공사기간 : 2019.7~2022.9

2) 사고경위

○ 지하1층 흙막이 공사 완료 후 바닥 토사정리(청소) 작업 중 천장슬래브(철거대상)가 붕괴되면서 작업자 4명중 2명 매몰

3) 사고원인

○ 흙막이 벽체시공으로 기존 지하1층의 상부슬래브 및 벽체가 구조적으로 단절된 상태에서 상부슬래브를 지지했던 보강재(강재 서포트)를 조기에 제거하고 잔재(토사)를 정리하던 중 상부슬래브가 붕괴된 것으로 추정

나. 재발방지대책

- 해체공사 착수 전 시공사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및 인·허가기관에 제출·승인 받아야 한다.
- 구조물 해체 공사 전에 설계도면, 구조 계산서, 시방서, 공사비 내역서, 현장 설명서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를 필히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·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확인한 후 건물의 규모, 구조, 특징 등을 고려한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이 적정하게 선정되도록 해야 한다.



사고현장 위치도





